

#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 1999. 12. 15.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1999. 12. 18.
- 라. 상정일자 : 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1999. 12. 2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위생과장 최 광 문)

###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우리 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광주·전남지사간 협약 체결하여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으로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였으나
- 상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주체인 광주광역시에서 풍암 택지개발지구 내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해오고 부담금을 반납 요구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목적을 상실하여 이에 조례를 폐지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이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 화 순)

- 풍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비용으로 우리 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광주·전남지사간 협약 체결하여 납부받은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 상무신도심 내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풍암지구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던 부담금을 광주광역시로 반납하므로써 본 조례 존치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 8. 기타사항 : 없음